

WTO體制와 國際經濟秩序의 發展과 限界에 관한 法的 考察

최 흥 배*

A Legal Study on WTO Mechanism and the Development &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Hong - Bae Choi

1. 序 言

국제사회에서 경제의 문제가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국제경제에 관한 다양한 법이 生成·發展되었다. 특히 '國際經濟關係와 關聯된 法'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제정치라는 두 가지의 역사적 상황하에서 일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결과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제질서의 형성 및 발전은 세계경제의 상황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경제관계를 반영한 것이 여러가지 制度 내지 規範을 형성하게 되어 다양한 '국제경제의 법질서'로 구현되었다.

그런데 국제경제관계의 실질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WTO체제 이전까지는 GATT가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교역질서를 규제하였으며, IMF·IBRD는 국제통화·금융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WTO체제 이후에는 국제경제관계의 규제대상이 재화의외에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의 자본거래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의 수평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체제 출범과 OECD 가입확정 등으로 인하여 상품 및 자본거래 등에 있어서 대외시장 개방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은 21세기의 국제경제질서 형성을 위하여 WTO가 주관하고 있는 여러가지 협상의제(GR, TR, BR, CR)에서 자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자간협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규범형성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경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국제경제규범은 그 대상인 국제경제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법적 발전을 가져왔다. 즉 국제경제법의 규율대상인 국제경제관계가 다양한 법률주체, 세계국가간의 이질적인 경제체제 및 경제발전의 차이로 인하여 복잡한

*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법학박사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경제에 관련된 법'의 발전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장차 전개될 WTO주관하의 새로운 다자간협상(Round)에서 우리 國益이 반영된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一助하기 위함이다.

2. 國家間 體制에 의한 國際經濟規範의 形成

국제경제질서의 법적 기원은 중세이후 해상교통의 발달에 따른 국가간의 교역이 발전하면서, 국제사회에 해양의 자유, 최혜국대우 등과 같은 원칙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제2차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주로 國家間的 條約을 통하여 국제경제질서유지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제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第1次 世界大戰 以前

제1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金本位制가 국제적으로 확립¹⁾되어 국가간에 友好通商航海條約(FCN treaty)과 같은 兩者條約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 등과 같은 多者條約이 체결되었다.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간의 兩者條約에서는 관세의 인하, 최혜국대우의 허용 등이 규정되고, 多者條約에서는 국제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조정이 자유무역에 의한 자동조절작용에 의하여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국가간 조약외에는 국제기구 내지 강대국에 의한 통상의 간섭이 작용될 여지가 별로 없었다.

2.2 第2次 世界大戰 以前

제1차대전 이후 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는 1929년 세계적인 經濟大恐慌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였다. 결국 금본위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시장에서의 교역과 관련된 자동조절기능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1930년 관세법을 통하여 高關稅, 輸入制限 등의 제한적인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국가들 사이에는 자국의 경제를 더욱 더 보호하는 입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폐쇄주의 경향이 확산되어 보편적인 국제경제법 질서가 형성될 수 없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국가간에 양자협정을 통하여 국제경제관계의 조정과 협력이 나타났다. 예를들면 국제사탕협정, 국제고무협정 등이 체결되었는데, 이러한 국제상품협정은 상품의 원활

1) Dominick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4th ed.), 1993, pp 637-638.

한 수요공급 내지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그 성격은 국가간의 국제카르텔협정이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법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어 하나의 법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3. 國際組織에 의한 國際經濟規範의 形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경제규범 형성과 관련하여, 비록 2차대전 이전에도 국제경제상황에 따른 발전이 있었지만 2차대전 이후에 국제경제에 관한 많은 새로운 법규제가 출현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은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법적 형성을 가져왔으므로, WTO체제의 형성을 분기점으로 하여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3.1 브레트우즈(Bretton Woods)體制的 成立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통상의 자유와 국제통화 및 금융에 대한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944년 7월 미국 New Hampshire의 Bretton Woods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2월 27일 국제통화·금융분야의 IMF, IBRD가 창설되었다. 다만 貿易分野와 관련하여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하 ITO로 약칭함)를 창설하려고 하였으나 협상을 주도한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므로써 그 설립이 무산되었다.³⁾ 그런데 국제무역기구의 설립과는 별도로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을 실시한 결과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하 GATT라 약칭함)'이 1948년 발효하였다.

그리하여 국제경제와 관련하여 무역은 GATT, 국제통화는 IMF, 국제금융원조는 IBRD가 담당하는 기본적인 축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일반적으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라고 부른다.

이는 1945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의 자유화가 전세계의 경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경제이론적인 바탕위에 정치적으로는 전승국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자유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경제의 법질서를 구성하고자 한 결과였다.⁴⁾

2) J. Jackson, W. Davey & A. Sykes,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est Pub., 1995, pp.289-318 참조.

3) ITO현장을 추진을 주도하였던 미행정부는 미의회의 반대로 비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만약 ITO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가 탄생하면 미국의 주권이 침해되어 미국내 산업보호가 곤란하게 된다는 이유로 미 상원이 비준을 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자국산업의 보호필요와 영연방 특혜의 유지 필요가 그 이유이었다. 이와 같이 주요국가들이 잇달아 비준을 하지 않으므로써 ITO설립은 실패하였으며 당시 호주와 리베리아만이 비준하였다.

3.1.1 國際通商秩序와 GATT⁵⁾體制

3.1.1.1 GATT와 自由貿易實現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과는 별도로 1947년에 23개국이 참가하여 관세교섭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상호간에 무차별대우·평등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한 관세양허·수량제한의 원칙적인 금지 등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만약 ITO가 설립되었다면 ITO헌장⁶⁾에 포함되어야 할 규정이었지만 ITO설립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GATT라는 단지 하나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GATT는 1948년 暫定適用議定書(PPA)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였고, ITO설립의 무산으로 ITO의 국제기구적인 성격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즉 무역장벽의 완화와 무차별대우를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전세계 생활수준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GATT⁷⁾는 세계경제질서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함께 세계경제전체를 발달시켰다.

GATT가 출범한 이래로 그동안 WTO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제8차 다자간협상(UR)에 이르기까지 다자간 국제교섭을 통하여 관세장벽⁸⁾과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세계 무역자유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GATT 제1차 제네바 관세인하협상을 시작으로 하여 GATT 제6차 다자간협상(케네디라운드)⁹⁾을 거치면서 공산품에 대한 많은 관세인하를 가져왔다.

한편 1970년대 이후 국제석유파동과 함께 EC, 일본 및 신흥공업국가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1974년 통상법과 같은 보호무역법안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자 미국내 관련업체들이 自國의 反덤핑법·상계관세법 등

4) J.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MIT Press., 1989. pp. 8-15 참조.

5) GAT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cGove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1986);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1969); Hudec, The GATT Legal System and World Trade Diplomacy(1975); Dam, The GATT-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1970) 참조. 국내서적으로는 위의 Jackson교수 서적을 발췌 번역한 한국무역협회(역) 'GATT해설'과 日本의 三宅 正太郎編著·貿易摩擦과 GATT(1985년)의 김인경(역)이 있다.

6) ITO헌장은 일명 '하바나(Havana)헌장'이라고도 한다. 이는 쿠바의 하바나에서 조인된 것에서 비롯된다. 동헌장에 관련된 문헌으로는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 The Havana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Public Affair Bulletin, No. 82(1950);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he Havana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Department state Bulltin, Vol. 17, No. 435(1947) 등이 있다.

7) 관세와 일반협정(GATT) 前文 참조: GATT는 총4부 38개조문과 라운드를 통한 부속협정(Code)을 포함하였다.

8) GATT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및 양허품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양허품목수가 1947년 1차(스위스, 23개국 참가)에서 약 45,000 품목, 1949년 2차(프랑스, 32개국 참가)에서 약 5,000 품목, 1950년 3차(영국, 34개국)에서 약 8,700 품목, 4차(스위스, 22개국 참가)에서 약 3,000 품목, 5차(스위스:딜론라운드, 약 4,400 품목, 6차(케네디라운드: 56개국 참가)에서 약 30,300 품목 및 7차(동경라운드: 99개국 참가)에서 약 27,000의 품목으로 늘어났다.

9) Kennedy Round(KR:1962-1967년)는 미국의 Kennedy 대통령이 대규모의 관세교섭의 개최를 주창하여 통상협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KR의 성과로는 양허대상품목의 평균관세 인하율이 약35%이며, 무역액으로는 약 400억달러 이상이였다. 또한 GATT 체약국간의 무역은 크게 확대되어, FOB에 근거하는 경우, 1963년에는 1,547억 달러였지만, 1968년에는 2,378억달러, 1973년에는 5,743억달러로 증대했다. 케네디라운드의 성과가 관세인하가 주요 내용이었지만 GATT 제6조 반덤핑규정을 보완하는 1967년 GATT반덤핑협정도 체결하였다.

과 같은 각종 통상법규의 발동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미국정부도 이에 따른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가들이 교역과 관련하여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간에 통상마찰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흐름속에서 GATT의 제7차 다자간 협상(동경라운드)¹⁰⁾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그 주요내용이 자유무역실현을 위한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동경라운드 협상결과와 주요 성과는 非關稅障壁의 輕減 또는 廢止를 규정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경라운드 국제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① 보조금·상계관세협정 ② 표준협정 ③ 정부조달협정 ④ 라이선스협정 ⑤ 민간항공기협정 ⑦ 관세평가협정 ⑧ 국제낙농품협정 ⑨ 우육에 관한 협정 등이다.

3.1.1.2 GATT의 限界

1990년대이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WTO체제가 성립된 현재까지도 GATT의 기본적인 틀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발전·유지되어 오고 있다. 즉 GATT는 그동안 세계경제질서 형성 및 유지를 위하여 기여한 바는 지대하였지만, 보편적인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국제경제의 현실상황에 따라 GATT의 기본적인 국제경제이론인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국제경제이론적으로는 리카아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론의 입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즉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을 출발점으로 하여 보호무역이론이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의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비효율성 내지 선진국의 일방적인 국제경제 발전이론에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¹¹⁾

한편 국제교역상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의 우월적인 지위가 상실되자 경쟁력이 없는 산업 분야에서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통상정책을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는 이중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이 보다 경쟁력이 있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쌍무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많은 통상마찰이 발생되게 되었다. 즉 선진국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분야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하는 이른바 신보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적, 경제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간에 관세동맹(CU)·자유무역지대(FTA) 등의 지역블록화를 위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여 GATT에 비합법적인 예외적 현상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즉 지역블록화를 통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하고자 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둘째, 법적으로는 진정한 자유무역질서 형성을 위한 규범이 완비되지 않았다. GATT에는 최혜국대우(MFN)원칙, 내국민대우원칙 및 수량제한금지 등과 같은 자유무역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대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득권조항(Grandfather Clause), 최혜국대우원칙(MFN)예외, 의무면제(Waiver)조항 및 긴급수입제

10) 동경라운드(1973-1979년)는 1973년 9월에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관세인하와 관련하여, 공산품에 대한 평균인하율이 약 33%이며 무역액으로는 약 1,120억달러가 대상으로 되었다. 그 결과 GATT 체약국간의 FOB에 근거하여 무역액은 1973년에는 5,743억달러이었지만, 1979년에는 16,347억달러, 1984년에는 19,154억달러에 달했다.

11) 국제경제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徐憲濟, 國際經濟法, 울곡출판사, 1996, 12-21면 참조.

한조치(Safeguard)등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예외조치들이 처음부터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존 GATT협정문에 1965년에 貿易과 開發(PART IV)의 章을 추가·신설하였고 또한 UNCTAD를 중심으로하여 제기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GATT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동경라운드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합법화하였다. 이는 국제경제에 대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통된 하나의 법규범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으로는 2次大戰以後 무역질서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여 왔던 GATT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ITO가 창설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운용되기 위한 국제협정이었다.¹²⁾ 따라서 GATT는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함으로써, IMF등과 비교해 보면 처음부터 그 기능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들어 GATT는 분쟁해결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GATT는 분쟁해결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Panel제도를 도입하여 국제통상분쟁의 다자적인 해결을 중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GATT에서의 분쟁해결보다는 Super 301조의 발동에 의한 쌍무협상으로 분쟁해결을 선호함으로써 GATT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넷째, 정치경제적으로는 2차세계대전 이후 민족해방운동과 더불어 식민지주의 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점차 독립하여 국제무대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은 식민지·패권주의를 반대하는 집단적 대항세력으로 성장하여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77그룹의 개발도상국이 UNCTAD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게 특혜대우를 부여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NIEO)¹³⁾를 주창하여 이른바 南北問題가 시작되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주의에 의한 동일한 규제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962년 천연자원의 영구주권에 관한 선언, 1974년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宣言과 行動綱領 및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등으로 나타나면서 국제경제규범에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끝으로 국제정치적으로는 舊蘇聯, 중국 등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세계국제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중앙계획통제권 경제체제가 함께 공존하여 세계는 2대 경제체제의 대립이 형성되었다. 결국 GATT의 기능은 전세계시장이 아닌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시장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3.1.2. 國際通貨秩序와 國際通貨基金(IMF) 體制

3.1.2.1. 國際通貨基金(IMF)과 國際通貨協力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2차대전 이전에 각국은 경쟁적으로 自國 貨幣의 평가절하를 하

12) GATT는 법적으로는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GATT사무국은 형식적으로는 '국제무역기구 잠정위원회'였다. 하지만 GATT가 상설적인 기관이 되었으며 그 사무국장을 GATT사무총장으로 부르는 등 GATT사무국으로서 널리 알려졌었다.

13) 신국제경제질서의 구체적 내용은 主權의 獨立과 平等, 經濟的 自決權, 開途國에 대한 開發援助의 확대 및 多國的企業의 규제와 감시 등이다.

기 위한 환덤핑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한 세계무역의 쇠퇴는 안정적인 換制度의 창설이 필요하게 되어 1945년 IMF가 탄생되었다.¹⁴⁾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通貨가 그 지급수단이 되므로 국제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나 자유로운 通貨交換이 없으면 국제교역의 원활화를 이룰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점점 심화되면서 각국의 환율문제와 국제수지문제는 국제교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IMF는 첫째, 국제통화협력을 증진시켜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둘째, 회원국간의 외환거래의 질서를 유지 및 경쟁적 평가절하를 회피하고 셋째, 회원국간의 통화거래에서 多者支拂制度(Multilateral System of Payments)설립을 추진하여 국제통상에 장애가 되는 외환거래¹⁵⁾제한을 철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MF는 換率評價(parity of exchange)¹⁶⁾의 安定과 會員國間 通貨의 強制兌換(compulsory convertibility)¹⁷⁾을 규정하여 국제통화협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IMF는 국제적인 환시세의 안정과 환거래의 자유를 확보하고 또한 각 회원국의 국제수지의 안정과 조정을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IMF는 각국의 경제력에 따라 출자를 받아서 회원국 등이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의 대출을 해주어 국제금융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3.1.2.2. 國際通貨基金(IMF)의 限界

국제통화협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IMF체제는 1960년대 후반에 그 기능에 있어서 여러가지 한계를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세계통화협력을 위한 IMF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國際收支 및 國際信用이 악화되면서 국제사회의 基軸通貨로써 미달러의 지위가 급격히 하락되었다. 결국 미국은 화폐의 금태환을 중지시키는 조치 및 자국화폐의 환율을 유동화시켜버림으로써 IMF통화체제는 근본적으로 동요되기 시작하였다.¹⁸⁾ 그리하여 IMF는 1971년 Smithsonian협정을 통하여 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1944년 이래 유지되어온 고정환율제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金の 공식가격이 폐지되고 SDR¹⁹⁾을 지불준비의 주요수단으로 하는 1978년 Kingston협정이 체결되면서

14) IMF와의 긴밀한 조정 및 협조를 GATT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GATT협정상의 외환관리와 통화정책에 관한 조항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으로는 GATT 15조 4항, 1조 12항, 2조 3항·6항, 6조 2항·3항, 7조 4항, 8조 1항·4항이 있고 또한 국제수지조항은 GATT 제11조-14조, 제18조 B가 있다.

15) 外換去來는 貨幣 그 자체를 상품으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화폐로 표시된 수익자본을 거래하는 자본거래와는 구별된다.

16) 원칙적으로 환율을 鎊에 기준하여 확정하고 이 공식기준환율에 비하여 상하 각 1%의 범위내에서 유동을 인정하였다. 다만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 IMF의 통제하에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17) 強制兌換을 해야하는 의무(IMF 8조에 규정)가 있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고 통칭하는데, 이는 서구 선진국을 주축으로 40여개국이며 한국은 1988년 11월에 IMF 8조국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강제태환에 대한 예외(IMF 14조에 규정)가 인정되는 국가를 IMF 14조국이라고 한다.

18) 1971년 8월 15일 Nixon미국 대통령은 미국화폐의 금태환을 중지하였고, 1971년 12월 24일 미국정부는 미국화폐를 7.89% 평가절하하였다.

19) SDR은 IMF에서 상호결제수단으로 도입하였다. 그 가치는 1974년까지 순금무게로 계산하여 IMF창설 당시의 달러가액에 상당하는 0.888671g로 하였고, 1980년까지는 16개국 통화의 가중평균가치로 결정하였으며, 1981년 이후에는 5년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출량이 상위 5위이내의 가입국통화, 즉 선진 5개국 통화를 가중평균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자유로운 통화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²⁰⁾

둘째, IMF와는 별도의 地域通貨協定の 存在이다. 우선 sterling지역²¹⁾과 franc지역이 있는데, 특히 franc지역은 상당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franc지역의 경우 회원국간에 화폐의 이동이 자유롭고 franc을 기준으로 고정환율제를 사용한다.²²⁾ 또한 EU통화협력제도가 있다. EU는 1979년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EMS)를 창설하여 그 단위를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ECU)²³⁾로 정하여 EU회원국간에 통화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西歐先進國間의 通貨協定の 存在이다. 그 예로써 OECD의 금융지원기금제도가 있다.²⁴⁾ 이는 OECD회원국 중에서 국제수지에 곤란을 겪는 경우 IMF차관에 추가하여 별도의 차관을 제공해주게 된다.

이와 같이 IMF체제는 지역통화협정의 발전, 분쟁해결기구의 부재 및 창설 당시의 각국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외환거래 자유화에 예외적인 규칙을 인정하는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통화협력과 안전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국제경제법의 규제원리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3.1.3. 國際金融秩序와 世界銀行 體制

3.1.3.1. 世界銀行(IBRD)과 國際金融援助

전후 국제금융제도의 창설 역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의 효력발생으로 이루어졌다. 국제금융문제를 주관하는 기구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중심이 되었으며, 姊妹機構로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회사(IFC)를 창설됨에 따라 이를 통칭하여세계은행이라고 부른다.²⁵⁾

세계은행의 역할과 목적은 전후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회원국에 대하여 장기적인 금융 즉, 자금의 대부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BRD회원국은 일정한 자본을 출자한 뒤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만 IBRD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IMF회원국이어야 한다.

20) Kingston협정은 1978년 1월 자마이카의 Kingston에서 체결된 협정으로 1978년 4월 효력을 발생하였다. 회원국은 ① 금기준 화폐가치 산정금지 ② 환율규정 및 변동사항을 IMF통보 ③ 질서있는 경제성장 및 합리적 가격안정을 지향하는 경제금융정책의 채택 ④ 통화관계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IMF에 보고하고 감독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Sterling지역은 영국 파운드(pound)를 주축으로 하여 과거 영국 식민지국가들이 모여서 이룬 통화지역이었으나 1972년 영국이 자본이동의 자유제도를 폐지하자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franc지역은 원래 프랑스본토와 식민지간의 중앙통화제도로서 1932년에 창설되어 이들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지역통화협력제도가 되었다. 회원국의 화폐단위를 CFA franc이라고 하여 프랑스 franc의 50분의 1 가치로 고정하고 프랑(franc)으로 자유롭게 교환하여 준다.

23) ECU는 EU의 단일통화단위이며 또한 결제통화이다. 회원국의 법정기준치가 되는 ECU는 회원국 통화의 가중평균치로 결정한다. EU는 지역통화의 안정과 원활화를 위하여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1999년 말까지 단일통화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24) 1975년 4월 OECD 24개 회원국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다.

25) IDA는 IBRD 융자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IFC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적인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체제는 회원국들의 금융관계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회원국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전후 전쟁의 피해 복구와 경제부흥에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고, 후에 IBRD 용자는 개발도상국의 지원으로 변천하였다. 일단 어느 국가가 세계은행에서 용자를 받는 경우 세계은행의 용자요건 충족에 따른 신뢰성으로 인하여 민간자금의 도입이 용이하다.

3.1.3.2. 世界銀行(IBRD)의 限界

세계은행은 各國의 경제력에 의한 출자로 운영되므로 세계은행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국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IBRD의 용자내용 및 조건이 개발도상국 지원에 충분이 지원될 수 없게 되었다. 즉 IBRD의 용자조건이 일반적인 상업차관보다는 그 대부조건이 유리하였지만, 개발금융원조가 더욱더 절실한 개발도상국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IBRD는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국가, 예를들면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가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IBRD가 중심이 된 국제금융제도의 경우는 GATT와 IMF와는 달리 처음부터 국제경제법적으로 국제금융에 대한 어떤 원칙을 규정하여 직접적인 규율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자본이동의 자유화²⁶⁾라는 규범내용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었다. 즉 IBRD는 필요한 자본을 국제적으로 대여해주는 정도의 임무외에는 국제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원리는 없었다.

3.2. WTO體制의 成立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는 많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즉 상품교역이 중심이 된 GATT체제에서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시키는 등 그 규제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WTO체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금달러본위제인 고정환율제로 출발한 IMF체제가 변동관리환율제²⁶⁾로 채택하였고, 전후 경제개발원조 성격의 세계은행도 그 성격이 국제경제상황에 따른 변혁을 가져왔다. 따라서 WTO체제가 성립된 오늘날 국제경제질서 체제의 특징은 GATT에서 WTO체제로 전환, IMF·IBRD 체제의 변혁 및 OECD 기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3.2.1. 新國際通商秩序와 WTO체제

3.2.1.1. WTO體制 成立以前의 通商政策·通商法規의 動向

동경라운드성립 후의 1980년대부터 199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주요선진국인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통상법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26) IMF규칙 6조 3항은 회원국들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통제를 인정한 것이다.

첫째, 自由交易對象의 擴大를 요구하였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국제통상에 있어서도 상품 교역외에도 서비스, 투자 및 지적재산권의 교역에 대한 비중이 점차로 증대하였다. 그러나 GATT체제는 상품분야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GATT체제로써는 서비스·지적재산권교역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비교우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분야에 자유교역 실현을 위한 국제협정의 정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종래의 국제협정으로는 그 보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UR협상의 주요의제로 포함시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규범의 정립을 주장하였다.

둘째, 法的 保護主義를 強化하고자 하였다. 미국·EU를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의 반덤핑·상계관세법의 적용강화, 미관세법 337조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 및 자국 독점금지법의 역의적용 등을 통한 실질상의 수입규제를 하였다. 따라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國內法을 더욱 더 보호주의 경향을 가진 法으로 制定 내지 改正하였다.

셋째, 兩國間主義를 擴散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兩者協定을 통하여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이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양국정부가 수입국의 어떤 제품에 대하여 수출국이 수출을 규제하는 경우로써 이른바 회색조치(Grey-Area Measures)라고 부른다. 따라서 회색조치는 GATT체제 범위밖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써 兩國間에 수출자율규제협정(VER)을 체결하는 데,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의 교섭자체가 선진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넷째, 地域主義가 擴散되었다. EU 및 NAFTA²⁷⁾와 같이 역내국가들간에 지역을 블록화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과 EU같은 선진국들이 協定을 통하여 배타적인 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수입제한 조치 내지 대외공동통상을 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一方主義가 強化되었다. 미국과 EU같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내법, 예를들어 미국의 통상법 301조, EU의 신통상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통상마찰과 관련된 분쟁을 일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²⁸⁾ 이는 선진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강행하는 제재조치이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질서유지를 저해하는 것이었다.

3.2.1.2. WTO의 自由交易秩序의 強化와 새로운 課題

WTO체제의 출범은 GATT 제8차 Uruguay Round²⁹⁾협상의 결과이다. 1995년 1월 1일

27) EU와 NAFTA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은 EU는 관세동맹으로써 역내에서 관세 등 통상제한을 폐지할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와의 관계에서 공동통상정책, 예를들면 대외공동관세 등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NAFTA는 자유무역지대로서 역내에서 관세 등 통상제한을 폐지하지만 역외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회원국이 역외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28) 어떤 국가(미국)가 다른 국가(예를들면 한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한 등의 보복적인 제재조치를 과하는 것이다.

29) 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 主要한 問題의 分析으로써는, Petersmann and Hils (ed.), The New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21세기의 新國際經濟秩序 형성 및 유지의 법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30) 따라서 WTO체제는 기존의 GATT체제보다는 다음과 같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첫째, WTO의 규제대상이 포괄적으로 되었다. 즉 GATT는 공산품 분야의 교역에 한정되었으나 WTO협정에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분야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둘째, WTO규범이 강화되었다. 우선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여 무역분쟁은 WTO에서 규정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GATT에서 비합법적인 조치들의 철폐와 함께 규범의 명료화 등을 실현하였다.

셋째, WTO라는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동안 국제협정으로 출발한 GATT를 명실상부한 다자간무역 체제로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WTO체제는 GATT체제를 보다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다자간 교역체제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역자유화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게 되었다.

넷째, WTO는 새로운 규범형성을 위한 다자간협상을 주관하고 있다. 즉 WTO체제는 자유거래시장 형성을 위한 규범의 유지와 함께 새로운 규범형성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WTO는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법적질서유지를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된 사안과 UR협상동안에 제기된 여러문제들을 장차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려는 구체적인 대상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환경규제와 무역분야이다. 즉 환경라운드(GR)는 환경보존·환경보호정책이나 방식 등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간 첨예한 대립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환경표준을 설정하여 환경보호와 무역거래의 자유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그 내용이 된다. 즉 환경관련기준에 의하여 환경규제대상 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② 무역과 노동조건에 관한 국제기준분야이다. 즉 노동라운드(BR)는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의 제정이 그 내용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3권 보장, 강제노동금지, 연소자 고용제한,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정 등인데 이런 노동조건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로 부터는 수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③ 국제기술규범의 제정이다. 즉 기술라운드(TR)는 OECD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술규범제정 논의와 UR에서 제시된 국제기술규범 즉 지적재산권, 연구개발보조금 규정, 환경관련기술규범 등과 같은 국제기술규범 제정을 의미한다. 개별국가의 기술개발정책이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국가간의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④ 국경을 초월한 이루어 지고 있는 기업의 제한적 상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에 대한 국제적 규정이다. 즉 경쟁라운드(CR)는 각 국가간의 상이한 기업관행과 시장구조에서 제한적 거래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정을 설정하므로

GATT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1988) 參照. Uruguay Round(UR)는 1986년 Uruguay Punta del Este에서 다자간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GATT주관하의 제8차 라운드가 공식 출범하였다. 최초 협상의제는 15개분야로써 관세, 비관세조치부문, 열대산품, 천연자원산품, 섬유류, 농업, GATT규정, Safeguards, MTN협정, 보조금·상계조치, 분쟁해결, 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및 서비스 분야 등으로 구성되었다.

30) UR은 처음에 1990년말까지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EU의 농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으로 좀처럼 타협점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GATT 사무총장안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한 결과, 결국 각국이 이를 받아들여서 1993.12.15. UR은 타결되었다(참가국 117개국). 그 후 1994년 4월에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협정의 조인식이 이루어졌으며, 주요참가국(미국, EU, 일본 등)의 국내적 비준절차의 완료를 거쳐, 1995년 1월 1일에 WTO협정이 실시되게 되었다.

경쟁여건을 촉진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수직·수평협정, 독점지배력 남용, 국제적 기업인수·합병, 기업간 국제협정 등이다.

3.2.1.3. WTO체제의 限界

WTO체제의 출범은 그 동안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여 왔던 GATT체제의 약점을 보완하여 보다 강화된 규범으로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은 틀림없다. 즉 WTO는 세계교역의 확대 내지 다자주의에 의한 분쟁해결강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國際通商秩序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WTO가 하나의 세계시장을 형성시키는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WTO체제의 출범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단일의 세계시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선 자유교역을 위한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① 공산품교역의 경우 無稅化品目 도입 등으로 교역자유화가 상당히 실현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품목에 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② 농산물 교역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화 및 최소시장접근보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점진적인 개방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개방화와 관련하여 저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융예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등의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③ 서비스 교역의 경우에는 GATS에서 일반원칙만을 규정하고 금융, 통신 및 운송 분야 등의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은 계속 논의중에 있다.

다음으로 공정한 수출입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조치의 발동요건을 명료화하여 이의 남용을 억제하였다고 하지만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완성되지 않은 구체적인 규범을 어떻게 정립하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분야(GR·TR·CR·BR)에 규범을 장차 어떻게 조화롭게 형성하느냐가 WTO의 과제이다.

둘째, WTO체제가 성립된 현재에도 南北問題의 殘存으로 인한 복잡한 시장체제원리가 존재한다. 현재 세계각국들의 경제현실은 1인당 GNP가 100달러가 안되는 국가부터 10,000달러가 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경제이론이 중심이 된 자유무역체제로써 완전한 시장개방화에 세계모든 국가와 지역이 참가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도외시키고 국제경제법의 일반원칙만을 고집한다면 경제발전의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현실의 특수성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규율하는 지배원칙은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의 선진강대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선진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논리에 의하여 통상마찰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WTO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셋째, WTO체제이후에도 지역경제 블록화가 강화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C)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亞·太經濟協力體(APEC) 창설 등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은 원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GATT24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³¹⁾ 따라서 지역주의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련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를 전면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31) 1948년 GATT 창설당시 이를 인정하게 된 원래의 의도는 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기대하는 순수한 차원이었지 결코 지역경제블록화를 통한 차별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의 EU의 공동시장 형성과 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NAFTA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WTO/GATT에 적합한 것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몇가지의 불명확한 면이 있다.

하지만 어떤 지역주의가 배타주의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역외국가들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역외국가들도 이에 대항하는 배타적인 블록을 형성하여 세계경제가 몇 개의 폐쇄적인 블록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분명히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WTO체제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넷째, WTO체제 성립후에도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쌍무적인 해결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즉 WTO의 분쟁해결제도의 강화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WTO협정에서 아직 규율하고 있지 못하는 환경 분야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등의 선진국들은 Super 301 조와 같은 자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다섯째, 자본주의 경제질서 체제인 WTO출범이후에도 東西問題가 殘存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소련과 동독의 소멸, 동유럽제국의 시장경제화 등으로 중앙계획경제권(Centrally Planned Economies)에 속하는 국가들이 급격히 변화했다. 현재 중앙계획경제권국이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쿠바, 북한, 일부 동남아시아제국 등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선진자본주의권과 비교하여 보면 중앙계획경제권의 경제규모나 그 의의가 점점 미약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약간의 변형은 비록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진 사회주의 국제경제법을 제창³²⁾하여 왔다. 현재 WTO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이제 막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들로서는 자유무역체제의 도입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WTO체제내에서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가 과제이다.

3.2.2. 新國際資本秩序와 IMF · OECD

3.2.2.1. IMF와 國際通貨體제의 發展

國際通貨問題는 國際通商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각 국가의 경제정책상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통화를 규율하고 있는 IMF체제는 1978년 Kingston협정에 의하여 금·달러본위제의 고정환율체제(fixed exchange rate system)가 붕괴되고, SDR본위제인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system)로 변경됨으로써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제통화협력이라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정해 놓은 IMF Kingston체제로는 국제통화의 확고한 안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通貨上의 엄격한 행위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현재의 제도가 잠정체제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최근에 IMF개혁방안이 제시되었는데 ① IMF는 개별국가의 경제정책·금융상황을 감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② IMF에 긴급구제 금융제도를 신설하고 ③ 일반차관협정 출연금을 증대하기 위해 기존 G-7회원국 이외의 재정능력이 있는 국가에 출연을 촉구하며 ④ 세계은행의 역할을 줄이고 지역개발은행을 활발히 운영하기로 한다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³³⁾

32) 사회주의 국제경제법을 주창한 학자로서는 舊蘇聯의 M. Boguslavskii와 W. Seiffert 등이 있다. W. Seiffert는 사회주의 국제경제법을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관계 및 교통분야에서 사회주의 국제분업과 협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IMF체제가 IBRD의 주요기능인 금융원조를 흡수하게 됨으로써 IBRD의 역할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IMF가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질서를 규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EU의 지역적 통화통합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체제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조화시킬 수 있는 지가 그 주요과제이다.

3.2.2.2. OECD³⁴⁾와 資本移動自由化의 實現

국제교역상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이상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국제자본거래는 국가간의 자금이동이 이루어지는 거래로써 그 형태는 직접투자, 해외증권투자, 주식·채권거래 및 단기금융거래의 형태로 나타난다.³⁵⁾ 그런데 외국에서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동하는 직접투자의 경우 각국가간의 투자정책, 규제관련 법규 및 규제정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제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국제규범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OECD는 설립현장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961년 자본이동과 경상외무역 거래의 자유화에 관한 규약(The Codes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and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과 1976년에 국제투자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 및 결의(Declaration and Decis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가 있다. 그리고 1993년에 OECD각료이사회의는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기존의 OECD투자규범의 강화, 투자대우 및 보호기준의 설정,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현재 WTO에서는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으로 무역관련 투자규범³⁶⁾과 서비스거래의 경우³⁷⁾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WTO는 그동안 OECD에서 연구검토된 투자규범내용을 새로운 협상의제로 설정하여 모든 WTO회원국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투자규범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분야에 대한 규범제정은 장래 WTO의 새로운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33) 徐憲濟, 前掲書, 670면.

34) 한국은 1995년 3월에 가입신청하여 19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이 결정되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OEEC를 前身으로 하는 OECD는 경제에 관한 선진공업국간의 국제협력기관으로써 주된 목적은 경제성장과 개도국성장 및 자유롭고 다변적인 무역의 확대 등이다.

35) 국제자본거래 중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경영지배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하고, 단지 이자나 이익배당 등 자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간접투자 또는 portfolio투자라고 한다.

36) WTO에 의해 규제되는 通商分野에선 무역관련 투자규범(TRIMS)협정이 있다. 무역관련 투자와 관련해서는 특히 부품 및 원자재의 현지조달의무(local content), 수출이행의무(export requirement) 등이 문제가 되어 왔었다.

37) 서비스내용 자체가 자본이동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거래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본이동이 필요한 상업적 주재의 경우와 관련한 서비스거래는 자본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WTO 서비스협정(GATS)는 자본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설치하고 있다.

4. 國際經濟規範 形成을 위한 努力과 限界

4.1. 世界市場의 普遍性和 國家利益

4.1.1. 國際市場의 發達과 秩序維持

현재 국제사회의 경제주체로 다국적기업과 같은 私企業이 국제시장이라는 보편성을 가진 영역에서 超國家性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즉 국제시장은 어느 국가의 국내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각국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많은 경제단위가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국제거래에는 '國境'이라는 것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게되어 국제시장은 '國際性 내지 普遍性'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交通·情報通信의 發達, WTO체제의 출범, 중앙계획경제권체제 국가의 몰락 내지 자유경제체제의 부분적인 도입 등으로 세계시장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각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로운 경쟁으로부터 국제사회의 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기구(WTO, IMF체제)를 통하여 國際市場의 보편성을 저해하는 國家主義的인 通商·外換制限을 철폐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국제시장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4.1.2. 國際社會의 連帶性 強化와 國益關係 調整

국제사회는 개별국가의 경제체제와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 및 국가의 가치관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보편적인 국제시장질서를 제약하려는 경우가 많다.³⁸⁾ 따라서 국제시장과 국익의 관계는 만약 어느 국가가 시장개방을 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될 경우에는 조정·협력관계가 되지만,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시장개방이 오히려 자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조치 등을 발동함으로써 相衝關係가 된다.

따라서 국제교역을 통한 세계경제발전을 위하여 국제경제규범에는 어느 국가가 통상·투자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경제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그러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그 국가의 기본이익을 지극히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그 國家에게 通商·投資에 제한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다.

하지만 국제시장과 국익관계는 경우에 따라 조정·협력관계 내지 상충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이를 一元的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된다.³⁹⁾ 결국 국가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한이 너무 강하게 되면 국가는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국제기구로부터

38) 예를 들면 美國의 수출관리법, 통상확대법 등에서 미국의 '安全保障'을 위해 공산국가들에게 通商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식량의 자체수급체제 확보를 이유로 농산물의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 '경제적 안전보장'이 그 근거가 된다.

39) 松下滿雄, 國際經濟法, 有斐閣, 1993, 7-8면 참조.

탈퇴와 같은 방법으로 반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공동체의 조직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상호연대성이 점차적으로 강화되면서, 어느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일탈한다면 그것은 곧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4.2. 國際經濟秩序 維持를 위한 國際規範의 必要性和 限界

4.2.1. 國際經濟 規範의 必要性

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경제규범을 형성시킨 세계무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國際經濟秩序의 동향은 지금까지 自由貿易主義와 保護貿易主義가 교대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계경제질서 질서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어느 일방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각국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經濟大恐慌이 발생함으로써 2차세계대전이 비롯되었다. 따라서 국제경제관계에 대하여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 세계시장에 파국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경제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사회의 발전과정과 국제규범간의 관련성의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제경제질서의 올바른 유지, 국제경제협력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국제경제거래의 안정을 위한 법적 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국내법, 경제정책 등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종래에 완전히 국제거래의 사법분야로 다루어져 왔던 많은 관계가 국제경제질서 유지라는 경제정책면에서 국가 내지 국제기구가 간섭하는 공법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시장과 국익관계를 조정할 국제적인 규범과 조직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4.2.2. 單一한 國際規範 形成의 限界

국제사회에 규범형성에 있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국내경제 상황이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시대상황에 따른 선진국의 경제정책 및 자국 통상법의 제정이 국제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국제경제사회의 질서변화는 세계각국의 국내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통일되고 종합적인 단일한 규범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첫째, GATT/WTO체제와 같은 다자주의를 통한 자국이익의 실현이다. 선진국들은 자국이 보다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서비스 내지 지적재산권의 자유교역을 위한 시장개방 확대를 추구하고자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즉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규범을 제정하고자 함으로써 일반적이고 단일화된 규범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둘째, 지역경제의 확산을 통하여 경제적,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역내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 UR협상을 통한 다자주의 시장체제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또한 NAFTA형성도 같이 추구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EU, NAFTA와 같은 지역경제의 블록화를 통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에 의한 규범형성에 걸림돌이 된다.

셋째,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양자간의 쌍무협상을 통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 역시 다자주의 실현을 위한 UR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EU, 미국등은 자국의 국내법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시장개방을 요구함으로써 보편적 다자주의 규범형성에 방해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경제사회에는 이질적인 경제체제와 현격한 경제차이로 인하여 複雜多岐한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즉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일부 저개발도상국의 존재로 인한 南北問題와 북한, 쿠바 및 중국 등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東西問題가 동시에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 보편적인 규범 형성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및 신보호무역주의인 공영무역이론 등은 결국 강대국이 經濟的·政治的·軍事的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시장에서 自國의 利益을 증진, 보호하기 위한 이론 및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균형발전 및 고용증대 등을 통한 생활경제여건 향상이라는 세계경제의 理想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제정책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경제법의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선진국들이 자국에 보다 유리하도록 개발한 여러가지 경제원리를 결국 제도화하고 규범화하여 이를 개도국들에게 적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WTO체제 출범으로 국제사회가 완전히 통일된 세계시장으로 형성되었다고 결코 볼 수 없으므로 선진자본주의권 국가의 일방적인 지배원칙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경제규범이란 결국 그 시대의 국제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배경을 인식하여 앞으로 논의될 새로운 다자간협상에서 미국 등의 선진국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입장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현실을 새로 형성될 국제경제규범에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가 啓發한 國家利益의 입장에서 通商·投資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규범이 정립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김인경(역), 三宅正太郎編著, 貿易摩擦과 GATT, 1985.
- 柳柄華, 국제법 II, 진성사, 1995.
- 李相潤,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5.
- 徐憲濟, 국제경제법, 을곡출판사, 1996.
- 徐憲濟,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국제경제법의 새로운 개념”, 통상법률, 1996.
- 松下滿雄, 國際經濟法, 有斐閣, 1993.
- 櫻井雅夫, 國際經濟法(國際投資), 成文堂, 1992.
- 丹宗昭信 山手治之 小原喜雄 編, 國際經濟法, 靑林書院, 1987.
- D. Carreau, P. Juillard & T. Flory, *Droit international économique*, Librairie géné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1980.
- Dominick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4th ed.), 1993. Hudec, *The GATT Legal System and World Trade Diplomacy*, 1975
- G. Schwarzenberger,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Recueil des Cours* 1, 1966-I.
- J.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1969
- J.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MIT Press., 1989.
- J. Jackson, W. Davey & A. Sykes,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est Pub., 1995.
- M. Katz & K. Brewster, *The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Relations: Cases and Materials* New York Foundation Press, 1960.
- Petersmann and Hils (ed.), *The New GATT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1988.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Vol. II, The American Law Institute, 1987.